
2020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안내

1 목 적

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

2 관련규정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3조(제안제도)
-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」

3 모집기간 : 연중

4 제안종류

<아이디어 제안>

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

<실시 제안>

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(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제출)

5 제안자격 및 인원


-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음.
-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.

6 제안대상 :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
<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>

- ❖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- ❖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- ❖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❖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- ❖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7 제안 제출

- 위원회 직원 :  e-제안마당 ☞ 제안등록
- 타기관 공무원 : 우편 제출(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제과)

8 제안 심사

접수기간	심사기한
1. 1. ~ 3. 31.	8월까지
4. 1. ~ 6. 30.	
7. 1. ~ 9. 30.	11월까지
10. 1. ~ 12. 31.	다음해 2월까지

9 시상 및 특전

제안심사위원회에서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」 제14조(심사기준 등)에 따라 채택제안을 결정하며, 창안상 등급은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으로 구분하고,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.

창안등급	기 준	부 상 금
금 상	95점 이상	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
은 상	90점 이상	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
동 상	80점 이상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
장려상	70점 이상	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

<인사상 특전>

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」의 “별표1”의 기준에 따라 특별승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.

창안등급	특전의 종류	특전대상
금 상 은 상 동 상	• 특별 승진	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
	•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포함	6급 일반직공무원
	• 특별승급	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·별정직 공무원
장려상	• 특별승급	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·별정직 공무원

<상여금 지급>

○ 요 건

-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
-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

○ 상여금 지급액

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,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「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」의 “별표2”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

지급대상		상여금 지급기준액
예산 절감	1,000만원 이하	상여금=예산절감액×30/100
	1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상여금=(예산절감액-1,000만원)×20/100+300만원
	1억원 초과	상여금=(예산절감액-1억원)×10/100+2,100만원
국고 증대		국고증대액의 10% 범위 안에서 지급
행정 개선		3,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함

<실적가점 및 상시학습시간인정>

구 분	실적가점	상시학습
금 상	0.5점	60시간
은 상		50시간
동 상		40시간
장려상	0.3점	30시간
등급 미부여	0.1점(건당) (심사위원회 결정)	10시간
제안 참가	-	5시간 (최대 10시간/분기, 20시간/년)

10 그 밖의 인센티브 제공

-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직원 및 소관부서(또는 시·도, 구·시·군 위원회 포함) 등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격려금 제공
- 불채택 제안자에게도 제안활성화 기여정도에 따라 격려금품 제공, 국외연수 선발시 참고

11 제안의 활용과 사후관리

- 채택된 제안은 지체 없이 업무에 반영
- 불채택 제안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, 행정환경 변화로 불채택 제안 시행 시 재심하여 포상 등 지급

12 권리의 국가승계

-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국가가 승계함.
-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적용함.

아이디어 / 실시 / 공모 제안서

수 신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

제안제목 :

제안자	성 명		생 년 월 일	
	소 속		직 급 (직 위)	
	기여도(%)		전 자 우 편 주 소	
	전 화 번 호 (휴대폰 :)		팩 스 번 호	

공동제안자	성 명	생 년 월 일	소 속	직 급 (직 위)	기 여 도 (%)

※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·상금 수여 및 특허 등
출원·등록 여부 () 년

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 : (서명)

- 붙임자료 : 1. 제안내용 설명서
2. 예산절감 산출내역서
3. 국고증대 금액 산출명세서
4.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
5. 그 밖의 참고자료

① 제안 제목	
② 제안 종류	
③ 개요	
④ 현황 및 문제점	
⑤ 개선 방안 (개선내용)	
⑥ 기대 효과 (개선성과)	▪성과가 나타난 일자(실시제안) :
⑦ 조치 사항	▪관련규정 개정() ▪인력추가 지원() ▪예산확보·지원() ▪업무프로세스 조정() ▪관련기관 협의() ▪기타()

< 작성요령 >

- ①제안제목 :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
- ②제안종류 : 아이디어 제안,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
- ③개요 :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
- ④현황 및 문제점 :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
- ⑤개선방안(개선내용) : 아이디어·공모제안→개선방안, 실시제안→개선내용 기술
-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.
- ⑥기대효과(개선성과) : 아이디어·공모제안→기대효과, 실시제안→개선성과 기술
- 아이디어·공모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,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,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
- ⑦조치사항 :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(한)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,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.